

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2000. . . .
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9. 8. 31) 및 동법시행령 개정('99. 12. 31, 2000. 7. 1)으로 의회의 년 1회 정기회 제도가 년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“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정례회 개최 : 매년 2회(조례안 제2조)
- 정례회 회기 :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(조례안 제3조)
- 집회(조례안 제4조)
 - 제1차 정례회의 : 7월 10일,
 - ※ 단, 총선실시하는 해는 본회의 의결로 9, 10월중 따로 정함.
 - 제2차 정례회의 : 11월 20일
- 정례회 심의안건(조례안 제5조)
 - 제1차 정례회의 :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
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
심의·의결
 - 제2차 정례회의 :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
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
안건 심의·의결

□ 첨 부

1.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안) 1부
2. 관련법규 발췌 1부
3. 참고자료

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,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38조(정례회의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개정 '91. 12. 31, '94. 3. 16, '99. 8. 31 시행일 2000. 1. 1]

<동법 시행령>

제16조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 [개정 2000. 7. 1]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신설 19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72호]